

## 안양시개성화사업운영규정

제정 1996. 5. 9 훈령 제290호  
일부개정 2009. 6. 24 훈령 제534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7. 6. 15 훈령 제670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기본요소와 응용요소를 관리하여 신·구도시의 화합과 애향심을 통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안양시개성화사업(이하 “개성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기능과 특징을 통한 정체성을 부각시켜 개성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도시개성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개성화사업과 관련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개성화사업 적용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 개성화사업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안양시개성화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다른법령등과의 관계) 개성화사업 추진에 있어 다른 법령이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통제관 지정) ① 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성화사업 적용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09. 6. 24, 2017. 6. 15>

1. 본청: 홍보기획관
2. 사업소: 주무과장(과장 직제가 없는 사업소는 소장)
3. 구청: 총무과장
4. 동: 동장

② 통제관은 해당기관별 추진되는 각종 사업중 계획수립단계에서 최종단계까지 개성화사업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개성화사업과 연계되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통제관은 별지 서식에 의한 개성화사업 추진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개성화사업 적용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개성화사업 적용물에 대하여는 별표 2의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① 본청 및 산하기관의 사업추진 주관부서에서는 개성화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통제관으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24 훈령제534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개성화사업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 홍보실장

부칙 <2017. 6. 15 훈령 제670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안양시개성화사업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홍보실장”을 “홍보기획관”으로 한다.

⑤ 부터 ⑬ 까지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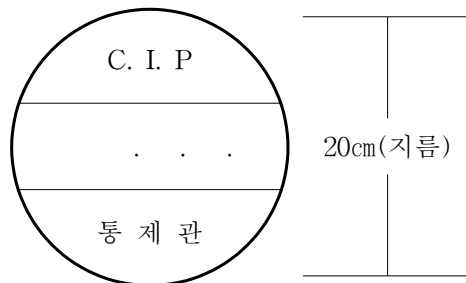
[별표 1]

도시개성화사업 적용 대상

구 분	내 용
기본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고타입(국, 한, 영문) - 형태, 색채, 작도법 등</li> <li>· 심볼칼라(전용대상) - 주조색, 보조색</li> <li>· 시그니취(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의 조화)</li> <li>· 전용서체(국, 영, 한문)</li> <li>· 마스코트</li> <li>· 방향표시</li> <li>· 픽토그램(안내, 지시, 금지용)</li> </ul>
응용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식류(명함, 봉투, 문서, 스티커, 표창장 등)</li> <li>· 안내체계(시가지, 청사)</li> <li>· 차량류</li> <li>· 홍보물</li> <li>· 장표류</li> <li>· 유니폼</li> <li>· 가로시설물</li> </ul>

[별표 2]

개성화사업 추진 통제인



[별지]

개성화사업 추진 등록대장

등록번호	일 자	추진부서	제 목	적용여부	비 고